

**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** (제7조의8제2항 관련)

| 위 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령       | 처분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1호 | 인증취소 |
| 2.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2호 | 인증취소 |
| 가. 원재료·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인증취소 |
| 나.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인증취소 |
| 다.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           | 인증취소 |
| 라.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인증취소 |
| 마.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·가공 방법대로 제조·가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시정명령 |
| 바.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인증취소 |
| 1)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2)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<p>사.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1)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</p> <p>2)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</p> <p>아.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·이행하지 않고,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(출하 등을 포함한다)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</p> |            | 시정명령 |
| <p>3.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3호 | 시정명령 |
| <p>4. 법 제4조제6항·제7항, 제5조제2항,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(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)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4호 | 인증취소 |
| <p>5.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·조사·평가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6호 | 시정명령 |
| <p>6. 법 제21조제1항, 제22조제2항·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(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)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8호 | 인증취소 |
| <p>7.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8호 | 인증취소 |
| <p>8.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8호 | 시정명령 |
| <p>9.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8호 | 시정명령 |
| <p>10. 제2호마목, 제3호, 제5호, 제8호 또는 제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5호 | 인증취소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9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11. 제2호사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9조의4제5호          | 인증취소 |
| 12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(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)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| 법 제9조의4제7호<br>및 제8호 | 인증취소 |